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0일, 안상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8.20.)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의원)

건강상태 · 식품섭취 ·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바(「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 전단), 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됨(제4조제2항제5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고,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총괄 목표인 ‘건강수명’이나 ‘건강형평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 건강설문, 영양으로 구분되며, 만성질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식품섭취 등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알 수 있는 만성질환,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내역이나

투약 정보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 위험 유발 요인 추출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 목적의 일반적 데이터 요청 절차에 따르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데이터 목록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해 데이터셋 약 70여종에 달함.

연구 목적의 일반적 데이터베이스 신청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여 제공되는데, 약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자료제공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내역, 투약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되면,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축적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암 등록 환자의 암 등록, 국가검진, 영양급여비용청구, 사망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고, 건강수명 산출을 위해 의료 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표 질환의 유병자·발병자 규모를 산출, 건강수명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증진 정책 개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자료제공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로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측면보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에 연계·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 중인 자료는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남용 방지를 위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정보 수집 및 목적 외 이용·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성¹⁾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제19조 등) 규정이 있으나, 「수산물질병관리법」(제45조제3항) 및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와 관련해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 요청 목적에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추가하고, 그 외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와의 연계·활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자료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사용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자료 요청 목적에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추가함(안 제30조의2제1항).

나.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2 조 제목을 “(자료제공의 요청)”에서 “(자료의 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을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 ----- ----- ----- -----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또는 법인·단체 등 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 ----- ----- -----. <u>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 료는 목적 외에 다 른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u>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u>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u> <u>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u> <u>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u> <u>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u> <u>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u> <u>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u> <u>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u> <u>「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u> <u>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u> <u>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u> <u>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u> <u>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u> <u>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u> <u>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u> <u>요청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u> <u>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u> <u>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u> <u>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u> <u>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u> <u>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u>

	<u>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